# 제357회국회 (임시회)

#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 2018년3월5일(월) 오후 4시

### 의사일정

- 1. 제35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서종식) 선출안
-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윤복남) 선출안
-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김춘곤) 선출안
- 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원영섭) 선출안
-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이금규) 선출안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 제35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 1 |
|----|---|------|
| 2.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서종식) 선출안(의장 제의)                     | 2    |
| 3.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윤복남) 선출안(의장 제의)                     | 2    |
| 4.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김춘곤) 선출안(의장 제의)                     | 2    |
| 5.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원영섭) 선출안(의장 제의)                     | 2    |
| 6.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이금규) 선출안(의장 제의)                     | 2    |
| 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    |
| 8.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 2    |
| 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헌법개정및정치개   | 혁    |
|    | 특별위원장 제출)   | ·· 2 |

(16시34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유섭 의원 대표발의로 개별소비세법 일 부개정법률안,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로 공익신고 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5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5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국회(임 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7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3월 5일 오늘 하 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서종식) 선출안 (의장 제의)
-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윤복남) 선출안 (의장 제의)
-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김춘곤) 선출안** (의장 제의)
- 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원영섭) 선출안(의장 제의)
-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이금규) 선출안(의장 제의)

(16시36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서종식) 선출안,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윤복남) 선출안, 의사일정제4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김춘곤) 선출안, 의사일정제5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원영섭)선출안, 의사일정 제6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이금규) 선출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한 개인정보 보호위 원회 위원 5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 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라서 의장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 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 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5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 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 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송기헌 의원, 임이자 의원, 정종섭의원, 최도자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5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5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6시38분 투표개시)

○의장 정세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7시00분 투표종료)

그러면 먼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서종식)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2표 중 가 197표, 부 23표, 기권 12표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서종식) 선출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윤복남) 선출 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2표 중 가 198표, 부 23표, 기권 11표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윤복남) 선출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김춘곤) 선출 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2표 중 가 220표, 부 5표, 기권 7표 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김춘곤) 선출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원영섭) 선출 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2표 중 가 213표, 부 15표, 기권 4 표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원영섭) 선출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이금규) 선출 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2표 중 가 202표, 부 20표, 기권 10표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이금규)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헌법개정및정치 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헌법개정및정치 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7시03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7항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춘숙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장대리 정춘숙 존 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 러분!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 춘숙 위원입니다.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 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 지역구 의 수의 증가와 지역별 인구 증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 편차의 허용 범위 및 선거구 인접 원칙을 감안하여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하고 그 에 따라 선거구 구역표를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를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총정수표를 조정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가 변 경된 경우 변경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표의 등가 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세종시 지역구 시 의원 정수를 현행 13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였습 니다.

6월 13일 이후에 다음번 지방선거를 위한 개정 논의 시에는 19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 은 제주도의회의원 정수의 상한을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성일종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 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 서산 · 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 월 1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서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지방동시선거의 시ㆍ도의원 의 정수 및 선거구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구 확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정 개특위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은 논의 과정을 비공 개로 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선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충남 서산시 2선거구입니다. 1 선거구에서 2선거구로 새롭게 편입된 부석면의 경우 제2선거구 내의 다른 지역들과 바다를 경계 로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천수만입니 다. 바다입니다. 이곳은 정주영 회장께서 간척지 를 막은 곳입니다. 사람이 왕래할 수가 없는 곳 입니다.

이러한 곳을, 이러한 생활권도 전혀 다르고 행 정구역도 전혀 인접해 있지 않은 지역을 한 선거 구로 묶은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예로 든 다고 한다면 삼척시와 태안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서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는 것하고 똑같은 것 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잘못된 지도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잘못 결정됐습니다. 이는 동 일 선거구 내의 지역들은 서로 인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위배한 것입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어렵게 통과됐고 현재 지 방선거 일정이 빠듯하다는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선거구, 단 한 명의 국 민이라도 억울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정수를 늘려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 의원이나 광역의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도심 지역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이것은 3당의 간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 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촉박성 때문에 논 의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1선거구에 속하는 석남동을 제2선거구에 보내고, 제2선거구에 속하는 시내에 있는 동문1동을 제1선거구에 보내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광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 주광덕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가정사로 인해서 의원 여러분께 심 려를 끼쳐 드린 점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 리를 간사로서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점,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 올립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서 여야 및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지난 논의 과정을 진솔하게 성찰하면서 향후 시·도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하게 될 때 국민의 뜻에 보다 부합한 방향과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국회는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이 개정안의 내용을 제대로알게 된다면, 협의 과정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면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에대한 두려움도 정치인의 양심도 정치 개혁을 위한 소신도 모두 실종된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비난과 질책에 국회는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국민과 언론의 비난과 질책, 국회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해야 할 무 거운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저는 감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드립 니다.

소위 광역의원이라고 칭하는 시·도의원과 기초의원이라고 칭하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그러한 안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문제에한정해서 검토를 해서 최종 의결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도 현재 중앙선관위 소속 위원장 1명과 여야 추천 각4인 체제, 이 체제도 저는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반대표는 저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찬성표를 던지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다음 기회인 4년 후에는 오늘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무거운 자신들과의 약속을 하시고 찬성표를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일은 우리 국회가 정말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지만 모두 약속해 주십시오. 오늘은 마음으로약속해 주시고 내일에는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 개혁을 위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진정성과 의지를 믿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늘 표결에 응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히 제가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서 오늘 이 법안 지혜롭게 잘 처리해 주시고, 저 는 여러분들께 찬성의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향후에는 진정으로 달라져야 하고 국민들이 지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의원 인천 서구갑 이학재 의원입니다. 저도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회 지역구 의원 정원은 31명에서 33명으로 2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인 천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1명 늘어났기 때문에 이 번 정수 조정에서 시도별로 늘어난 국회의원 1인 당 광역의원을 2명씩 늘리는 것으로 결정한 결과 입니다.

현재의 조정안에 따르면 인구가 53만 7000명인 인천 부평구와 54만 명인 남동구는 시의원이 각 1명씩 늘어서 6명이 되고 인구가 51만 6000명인 서구는 시의원이 그대로 4명이 됩니다. 남동구와 부평구에 비해 인구가 2만 명 정도 적은 서구의 시의원 수가 2명이나 적은 것입니다. 반면 서구 바로 옆 계양구는 인구가 32만 4000명으로 서구 보다 인구가 무려 19만 2000명이 적은데도 시의 원 수는 서구와 같은 4명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광역의원 배분에서 전체 구민 수보다는 국회의원선거구별로 광역의 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 두 곳을 분구했 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광역의원의 선거구를 자치구별 인구수가 아니 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기 준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광역의원의 선거구를 국회의원선 거구 기준으로 획정하는 것은 지방의원을 국회의 원에 예속된 것으로 보는 시각 때문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처럼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의 하위 영역 으로 구조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비민주 적인 선거구 획정이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 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향후 모든 선거구 획정은 앞서 주광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와 지방의회가 아 닌 선관위 책임하에 중립적인 기구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태 의원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님!

저는 부산 사하을의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입 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번의 지방선거의원 정수 확 대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셨는지 모 르겠습니다.

이 국회라는 곳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리 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고 저 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법이 통과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 떠한 절차적 이유로 통과가 안 되면서 이번에 발 표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사에 나왔습 니다, 의원정수를 늘리겠다.

무려 지방의원을 기초와 광역을 포함해서 61명 의 지방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 민들의 약 95% 이상이 반대하는 댓글들이 올라 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소 과격한 내용은 뺐습니다.

'이것도 실업률 해소 정책인가요?', '민생법안 처리는 하지 않고 의원 수 늘리는 것은 일사천리 로 처리하다니……', '세금으로 일자리 잘 늘리네 요', '세금 도둑 증원했네요', '무급 봉사직에서 국 민혈세 빨아먹는 사회악으로 변한 기초의원제도 없애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기초단체 가운데에서 재정자립도 30%가 안 되는 기초단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242 곳 가운데 무려 142곳이 재정자립도 30%가 안 됩니다. 지방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 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광역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던지는 그 투표 결과를 모니 터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국회의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악특 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번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 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자기 밥그릇을 챙긴다는 그런 비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

오늘 이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서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반대, 부결 해 주시고, 우리 20대 국회가 최소한 19대 국회 보다는 달라졌다는 그런 명예로운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 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갑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번 헌법개정및정개특위에서 지난 3월 1일 결정한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8일 본회의 때 처리해야 할 사 안이 헌정특위 자체의 공방과 샅바싸움으로 인해 오늘 뒤늦게 본회의에서 상정된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덕담을 건네 야 마땅하나 지금은 그런 의례적인 인사말을 드 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헌정특위가 이번 본회의에 넘긴 개정안은 먼저 졸속 합의 그리고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고 무줄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 그리고 도시 지역구 를 늘리기 위해서 농촌 지역구를 희생양 삼았다 는 세 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쫓긴 졸속 합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법정시한은 지난해 12월 13일이었습니다. 법정 시한을 75일 이상 초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자유한국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헌정특위는 거대 양당의 정치적 실리를 챙기기 위한 지루한 샅바싸움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특위 위원들조차도 헌정특위 출범 후 한 달 넘는세월을 허송세월했다, 그동안 뭘 했느냐라는 자성이 나올 만큼 총체적 난국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정개특위는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김재경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자유한국당 소속이 10명, 민주당 소속 이 10명, 바른미래당 소속이 4명, 정의당 소속이 1명입니다. 인적 구성에서 보다시피 더불어민주 당과 자유한국당이 확고한 주도권을 틀어쥐고 있 는 상태입니다.

헌정특위는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2월 28일 자정까지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3월 2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임박했음에도불구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 두려워서 정개특위는 3월 1일 졸속으로 개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콩 한쪽이라 도 더 차지하기 위해 거대 양당이 힘겨루기를 하 다하다 시한에 쫓겨서 급조해 낸 불량품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은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은 인구수라고 할 것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상한선·하한선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7년 9월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인구는 185만 5450명입니다. 이와반면 같은 시기 강원도의 인구는 전라북도보다 31만 명가량 적은 154만 7768명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번에 확정된 광역의원인 도의원의 정수는 전북이 35명, 강원이 41명입니다. 인구수가무려 31만 명이 적은 강원의 광역의원 정수가 전북보다 무려 6명이나 많은 상태입니다. 더구나이렇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광역의원 인구 하한선을 초과한 부안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 해당 지역주민이라면 이런 어 처구니없는 개정안을 흔쾌히 수용할 수 있겠습니 까?

세 번째로 개정안을 통해 전국 광역의원의 정수는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도시지역의 선거구는 대폭 증가한 반면 농촌지역 선거구는 현상유지 또는 통폐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광역의원 조정안을 보면서 거대 양당의 적 대적 공생관계와 양당중심제의 구조적 폐해를 다 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

거대 양당은 입으로만 농촌 사랑을 외칠 뿐 실 질적으로는 농촌 선거구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외 면하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 지 심각성을 노출하고 있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 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 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69인, 반대 113인, 기권 25 인으로서 성일종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공직선 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 에 따라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공 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26인, 반대 53인, 기권 34 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43인, 반대 34인, 기권 32 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66인, 반대 20인, 기권 28 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 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 제357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2018. 3. 5.

| 일 자 부의안건          |  | 비고          |
|-------------------|--|-------------|
| 3. 5.(월)<br>16:00 | <ol> <li>제357회국회(임시회)<br/>회기결정의 건</li> <li>안건심의</li> </ol> | ○3. 5.(1일간) |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성일종 의원 등 30인)

#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68인)

| 강 석 진 | 강 석 호 | 강 효 상 | 경 대 수 |
|-------|-------|-------|-------|
| 곽 대 훈 | 곽 상 도 | 권 성 동 | 김 규 환 |
| 김 기 선 | 김 무 성 | 김 선 동 | 김 성 태 |
| 金成泰   | 김 순 례 | 김 승 희 | 김 재 경 |
| 김 진 태 | 김 학 용 | 문 진 국 | 민 경 욱 |
| 박 덕 흠 | 백 승 주 | 서 청 원 | 성 일 종 |
| 송 석 준 | 송 희 경 | 신 보 라 | 심 재 철 |
| 안 상 수 | 여 상 규 | 염 동 열 | 원 유 철 |
| 유 기 준 | 유 민 봉 | 윤 상 직 | 윤 상 현 |
| 윤 영 석 | 윤 재 옥 | 윤 종 필 | 이 만 희 |
| 이 명 수 | 이 완 영 | 이 은 재 | 이 장 우 |
| 이 정 현 | 이 종 구 | 이 종 명 | 이 종 배 |
| 이 진 복 | 이 철 규 | 이 헌 승 | 이 현 재 |
| 임 이 자 | 장 병 완 | 장 석 춘 | 정 갑 윤 |
| 정 우 택 | 정 유 섭 | 정 인 화 | 정 종 섭 |
| 정 진 석 | 조 배 숙 | 주 승용  | 주 호 영 |
| 최 연 혜 | 함 진 규 | 홍 일 표 | 황 영 철 |

### 반대 의원(114인)

강 병 원 강 창 일 고 용 진 권미혁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희 김성수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우 김종민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문 희 상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범 계 박선숙 박 성 중 박 영 선 박 완 주 박용진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럱 서 영 교 설 후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옥 주 신 창 현 신 경 민 신 동 근 심기준 안 규 백 어 기 구 양 승 조 오 영 훈 우 상 호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동수 유성엽 유 승 회 유 은 혜 윤 영 일 윤 관 석 윤 호 중 유 후 덕 이 수 혁 이 개 호 이 동 섭 이 용 득 이 원 욱 이 인 영 이 재 정 이정미 이종걸 이 찬 열 이철희 이 춘 석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찬 0] 후 전 재 수 인 재 근 임 종 성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성호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주 광 덕 진 선 미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홍 익 표 홍 영 표

### 기권 의원(24인)

김 경 수 김 삼 화 김성식 김 수 민 김종 대 노 웅 래 박 대 출 박 인 숙 심 재 권 박지 원 신 상 진 신 용 현 오세정 오 신 환 윤 소 하 이 상 돈 이양수 이 언 주 이용주 이학재 장 제 원 전 희 경 정양석 추 혜 선 (원혜영 의원 착오로 이석현 의원석 표결기 조작, 천정배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투표 의원 206인, 찬성 의원 68인, 반대 의원 114인, 기권 의원 24인임)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126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고용진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칠 승 금 태 섭 김경수 김 경 협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규 환 김 두 관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성수 김성식 성 태 김 수 민 김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종 민 김 철 민 태 년 김 한 정 김 진 태 김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문 희 상 박 범 계 박 병 석 박 덕 흠 박 선 숙 박 완 주 박 영 선 박용진 박 재 호 반 정 박 주 민 박 차 대 박 홍 근 백 혜 련 백재 혅 서 영 11/ 설 훈 손 금 주 송 기 헌 소 병 훈 손 혜 워 송 옥 주 송 석 준 신 경 민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재 권 안 규 백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영 훈 오 신 환 우 원 식 위성 곤 우 상 호 원 혜 영 유 동 수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동 섭 이 수 혁 이용득 이 은 재 이 원 욱 이 인 영 이 재 정 이종걸 이종배 이 차 열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찬 0 후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전 해 철 장 석 춘 전 재 수 전 현 희 전 혜 숙 정성호 정세균 정 유 섭 정 춘 숙 제 윤 경 조 승 래 조 응 천 채 이 배 진 선 미 최도자 최인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 반대 의원(53인)

강 석 호 강 효 상 곽 대 훈 권성동 김기선 김 도 읍 김 무 성 金成泰 김 승 희 김 중 로 박 대 출 민 경 욱 박성중 박 인 숙 백 승 주 서 청 워 성 일 종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여 상 규 안 상 수 원 유 철 유 기 준 유민 봉 유성엽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이 개호 이 만 희 이명수 이 양 수 이 완 영 이장우 이종명 이태규 이 학 재 이 헌 승 임이자 장 제 원 전 희 경 정 운 천 정 인 화 주 광 덕 정 종 섭 조 경 태 조 배 숙

주 호 영 천정배 최 연 혜 하태경 홍일 표 기권 의원(34인) 경 대 수 김석기 김선 동 김 명 연 김 순 례 김 종 대 김 종 훈 김 학 용 노 회 찬 민 홍 철 박 지 원 송 희 경 신 동 근 심 재 철 심 상 정 엄용수 오세 정 윤 영 석 이 상 돈 윤 소 하 이 언 주 이용주 이정미 이종구 이진복 정 양 석 이 현 재 정 갑 윤 주 승용 정 우 택 정진석 최 운 열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황 영 철

#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143인)

추 혜 선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권 미 혁 고용 진 권칠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진 김 경 협 김 두 관 김 병 관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 수 민 김 영 진 김 영 호 김정우 김종민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선 숙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옥 주 신 경 민 신용 현 신 동 근 심기준 심 재 권 안 규 백 양 승 조 어 기 구 오 영 훈 오 세 정 오 신 환 우 상 호 우 워 식 워 유 철 워 혜 영 위성 곤 유동수 유성엽 유 승 회 유 은 혜 윤 관 석 윤 호 중 유 의 동 유 후 덕 이개호 이동섭 이명수 이상돈 이수혁 이용득 이용주 이 워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장우 이종명 이 재 정 이 종 걸 이 종 배 이 찬 열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혜 훈 이 훈

인 재 근 임이자 임 종 성 장 병 완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세균 정 운 천 정성호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춘 숙 제 유 경 조 승 래 조 응 천 주 승 용 진 선 미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영 표 반대 의원(34인)

곽 대 훈 곽 상 도 권성동 강 효 상 김 무 성 김기선 김 도 읍 김 명 연 김 순 례 김 승 희 민 경 욱 박 대 출 박 성 중 신 상 진 여 상 규 염 동 열 유기준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종 필 이 만 희 이 완 영 이철규 이태규 이 헌 승 장 석 춘 전 희 경 정 유 섭 정진석 조 경 태 주 광 덕

### 기권 의원(32인)

최연혜

주 호 영

경 대 수 김 규 환 김성태 金成泰 백 승 주 김 종 대 김 진 태 서 청 원 송 석 준 송 희 경 신 보 라 심 상 정 심 재 철 안 상 수 엄용수 유 민 봉 유 소 하 윤 영 일 유 재 옥 이 양수 이 언 주 이정미 이 종 구 이 진 복 이 혀 재 장 제 원 정양석 정 우 택 조 배 숙 추 혜 선 하 태 경 황 영 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167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고용 진 권 미 혁 권 칠 승 권 성 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진 김 두 관 김 무 성 김 경 협 김 규 환 김 병 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金成泰 김수민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해 영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현 권 남 인 순 문 희 상 노 웅 래 문 진 국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완 주 박용진 박 영 선 박 인 숙 박 지 원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정 박 차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청 원 훈 설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용 현 심 재 권 심기준 어 기 구 안 규 백 안 상 수 양 승 조 오 영 훈 오세정 여 상 규 오 신 환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동수 유성엽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관 석 윤 상 직 윤 재 옥 윤 후 덕 윤 호 중 이 개 호 이명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 동 섭 이 언 주 이 은 재 이 용 득 이 용 주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정 이정현 이종걸 이종명 이종배 이 찬 열 이 학 영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해 차 이혜훈 이 후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전 재 수 장 제 원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성 호 정세 균 정 양 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춘 숙 제 윤 경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주 승 용 주 호 영 진선미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반대 의원(20인)

강 효 상 곽 대 훈 곽 상 도 김기선 김 도 읍 김 순 례 박 대 출 신 상 진 유기준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종 필 이태규 이 만 희 이 완 영 전 희 경 정갑윤 조경태 주 광 덕 최연 혜

### 기권 의원(27인)

경 대 수 김 종 대 노 회 찬 민 경 욱 박 덕 흠 신 보 라 심 상 정 심 재 철 엄용수 염 동 열 유 민 봉 윤 소 하 윤 영 일 이 양수 이 원 욱 이정미 이종구 이 진 복 이 헌 승 이 현 재 정 우 택 임 이 자 정 종 섭 정 진 석 추 혜 선 하 태 경 황 영 철

(김영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67인, 기권 의원 27인임)

### ○출석 의원(245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금 태 섭 김 경 수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두 관 김 명 연 김 김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부 겸 삼 화 김 상 희 김 김석기 김선 동 김 성 수 김성식 김성원 김 성 찬 김성태 金成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재 경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남 인 순 원 노 회 찬 노 웅 래 문 진 국 문 희 상 민 병 두 민 경 욱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선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현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혀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청 훈 원 설 성일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 경 민 신 보 라 신 상 진 심기준 신용 현 신 창 현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오 세 정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동수 유 기 준 유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장 우 이정미 이 인 영 이 재 정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진 복 이태규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전 희 경 정성호 숙 정 갑 윤 정 우 택 정세 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운 천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유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태옥 제 윤 경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선미 천 정 배 진 영 채 이 배 최 교 일 최 운 열 최도자 최 연 혜 최 인 호 추 미 애 표 창 원 추 혜 선 하태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황 영 철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황 주 홍

### ○개의 시 재석 의원(213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기 동 민 김경수 금 태 섭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두 관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병 기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 성 원 金成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종 민 김 재 경 김정우 김종 대 김 종 석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민병두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완 주 박 순 자 박 영 선 박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서 영 교 럱 변 재 일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석 준 송 기 헌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안 상 수 양 승 조 어 기 구 안 규 백 여 상 규 엄용수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오 신 환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민봉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재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이 개호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수 혁 이 양수 이 완 영 이용득 이용호 이 은 권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 쳙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 채 익 이 찬 열 이철규 이철희 이태규 이 학 영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훈 장 병 완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석 춘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회 경 정 갑 윤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조경태 조 응 천 제 윤 경 조 승 래 주 승 용 주 광 덕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최도자 최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태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황 주 홍

### ○산회 시 재석 의원(214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경 대 수 고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곽 상 도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무 성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병 기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선 동 김 석 기 김성수 김성식 金成泰 수 민 김 성 태 김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승 희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훈 김 중 로 진 태 김 철 민 김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문 진 국 노 회 찬 문 희 상 민 경 욱 박 경 미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선 숙 박 성 중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영 선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지 원 박 정 백 승 주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서 영 교 서 청 원 훈 백 혜 련 설 손 금 주 손 혜 워 소병훈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영훈 우 상 호 우 워 식 원 유 철 위 성 곤 원 혜 영 유 기 준 유동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의 동 윤 관 석 유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재정 이정미 이 정 현 이 종 걸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 차 열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차 이 헌 승 훈 인 재 근 이 현 재 이혜훈  $\circ$ 임이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제 워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인화 정 종 섭 정진석 정춘숙 제 유 경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채 이 배 천정배 최 운 열 최도자 최 연 혜 최 인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황 영 철

### ○청가 의원(26인)

강 훈 식 권 석 창 권 은 희 김 동 철 김 상 훈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정 재 김 종 회 김 현 미 김 현 아 도 종 환 박 완 수 박 주 선 서 형 수 송 영 길 장 정 숙 정 동 영 안 민 석 이 석 현

정 병 국 정 재 호 조 정 식 조 훈 현 최경환(평) 황 희

### ○국회 참석자

입 법 차 장 진 정 구 의 사 국 장 권 영 진

### ○출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김 부 겸

### 【보고사항】

### ○간사 선임

| 위원회               | 위원명 | 교섭단체  | 연월일    |
|-------------------|-----|-------|--------|
| 국방                | 김중로 |       |        |
| 4차 산업혁명<br>특별     | 신용현 | 바른미래당 | 2018.  |
| 헌법개정 및<br>정치개혁 특별 | 김관영 |       | 2. 20. |

### ○의안 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윤재옥·김정재·이철우·유민봉· 이은권·유재중·박성중·성일종·김규환· 송희경 의원 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권미혁·송옥주·이훈·유승희· 문희상·이용득·송기헌·어기구·강병원· 정성호·신창현·김정우·박재호·김영호· 노웅래·기동민·김민기·유동수·김경협· 금태섭·서영교·소병훈·김병기·윤후덕· 서형수·이해찬·정재호·최운열·김두관· 김종민·김한정·표창원·박정·김상희· 황희·안호영·김철민·강훈식·윤관석· 박광온·이수혁·심재권·설훈·홍영표 의원 발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황주홍·정동영·장정숙·김종회· 최경환(평)·김경진·박지원·조배숙·박주현· 김광수·이용주·천정배·윤영일·정인화· 이상돈·유성엽·장병완 의원 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황주홍·정동영·장정숙·김종회· 최경환(평)·김경진·박지원·조배숙·박주현· 김광수·이용주·천정배·윤영일·정인화· 이상돈·유성엽·장병완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손금주·김수민·정동영·채이배· 이찬열 · 원혜영 · 주승용 · 최경환(평) · 김종훈 · 최도자·신용현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송기헌・김철민・윤호중・김성수・ 김부겸 · 김정우 · 신창현 · 정성호 · 김병욱 · 소병훈·이철희 의원 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김한표·박맹우·장석춘·이헌승· 원유철 · 김수민 · 임이자 · 여상규 · 정병국 · 이종명 의원 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김한표·박맹우·장석춘·이헌승· 원유철 · 김수민 · 임이자 · 여상규 · 이채익 · 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김한표·박맹우·장석춘·이헌승· 원유철 · 김수민 · 임이자 · 여상규 · 이채익 · 정병국·이종명 의원 발의)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8. 김한표・박맹우・장석춘・이헌승・ 원유철 · 김수민 · 임이자 · 여상규 · 이채익 · 정병국·이종명 의원 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김한표·박맹우·장석춘·이헌승· 원유철 · 김수민 · 임이자 · 여상규 · 이채익 · 정병국 · 이종명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김한표·박맹우·장석춘·이헌승· 원유철 · 김수민 · 임이자 · 여상규 · 이채익 · 정병국 · 이종명 의원 발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채이배·김동철·권은희·김관영· 김삼화 ·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신용현 · 오세정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동섭 · 이언주 · 이찬열 · 이태규 · 이학재・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 지상욱·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8건 3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8. 정유섭·장석춘·이철규·이만희· 강효상 · 김규환 · 최연혜 · 김정재 · 김성원 · 주광덕 의원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8. 김종민·강훈식·권미혁·김두관· 김철민 · 김한정 · 문희상 · 박영선 · 박정 · 백재현 · 설훈 · 송기헌 · 신창현 · 어기구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이개호 · 이수혁 · 정재호·제윤경·조승래·최운열 의원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김재원·박명재·이명수·정종섭· 경대수 · 민경욱 · 송희경 · 백승주 · 정태옥 · 나경원 의원 발의)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이혜훈·하태경·유승민·남인순· 박주민 · 정동영 · 이태규 · 채이배 · 김중로 · 윤영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고용진·송영길·박용진·윤관석· 민병두 · 이용득 · 전혜숙 · 제윤경 · 윤소하 · 손혜워 의워 발의)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고용진·송영길·박용진·윤관석· 민병두 · 이용득 · 전혜숙 · 제윤경 · 윤소하 · 손혜원 의원 발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황주홍·정동영·장정숙·김종회· 최경환(평) · 김경진 · 박지원 · 조배숙 · 박주현 · 김광수 · 이용주 · 천정배 · 윤영일 · 정인화 · 이상돈 • 유성엽 • 장병완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워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황주홍・정동영・장정숙・김종회・ 최경환(평)ㆍ김경진ㆍ박지원ㆍ조배숙ㆍ박주현ㆍ

김광수·이용주·천정배·윤영일·정인화· 이상돈·유성엽·장병완 의원 발의)

3월 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김재원·박명재·이명수·정종섭· 경대수·민경욱·송희경·백승주·정태옥· 권석창 의원 발의)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김정우·김영진·전혜숙·김종민· 송기헌·박정·정성호·이개호·윤후덕· 노웅래·송영길·우상호·황희·신창현· 박완주·전해철·강창일 의원 발의)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윤재옥·김정재·이철우·이은권· 유재중·주광덕·박성중·성일종·김규환· 강석진 의원 발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8. 김정우·김영진·전혜숙·김종민· 송기헌·박정·정성호·이개호·윤후덕· 노웅래·송영길·우상호·신창현·전해철· 박완주·강창일·황희 의원 발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8. 황주홍·정동영·장정숙·김종회· 최경환(평)·김경진·박지원·조배숙·박주현· 김광수·이용주·천정배·윤영일·정인화· 이상돈·유성엽·장병완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김현권·유은혜·김영호·김정우· 원혜영·박남춘·정동영·김종훈·안호영· 정성호·김병욱·이해찬 의원 발의)

3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8. 송옥주·김현권·이용득·남인순· 원혜영·김정우·소병훈·강병원·이훈· 김성수 의원 발의)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8. 박인숙·유승민·지상욱·김성원· 김종회·정동영·이명수·한선교·김석기· 정진석 의원 발의)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8. 신창현·김정우·오세정·김영호· 김철민·노웅래·문희상·손혜원·안규백· 표창원·윤후덕·정재호·최인호·소병훈· 원혜영·김병기·이훈 의원 발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황주홍·정동영·장정숙·김종회· 최경환(평)·김경진·박지원·조배숙·박주현· 김광수·이용주·천정배·윤영일·정인화· 이상돈·유성엽·장병완 의원 발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이혜훈·하태경·유승민·남인순· 박주민·정동영·이태규·채이배·김중로· 유영석 의원 발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황주홍·정동영·장정숙·김종회· 최경환(평)·김경진·박지원·조배숙·박주현· 김광수·이용주·천정배·윤영일·정인화· 이상돈·유성엽·장병완 의원 발의)

이상 6건 3월 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무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대표발의)

(2018. 2. 28. 윤후덕·김병욱·임종성·강병원· 민홍철·안호영·전현희·강훈식·김경협· 박정 의원 발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8. 심재권·설훈·임종성·노웅래· 이석현·신창현·이수혁·강훈식·김영호· 송옥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8. 윤종필·최도자·박인숙·원유철·임이자·강길부·박덕흠·정유섭·유민봉·송희경 의원 발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최도자·이동섭·조배숙·김광수· 김중로 · 손금주 · 하태경 · 이찬열 · 권은희 · 이언주 의원 발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김삼화·권은희·김관영·김동철·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신용현 · 오세정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동섭 · 이언주 · 이찬열 · 이태규 · 이학재 · 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 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황주홍·정동영·장정숙·김종회· 최경환(평) · 김경진 · 박지원 · 조배숙 · 박주현 · 김광수 · 이용주 · 천정배 · 윤영일 · 정인화 · 이상돈 • 유성엽 • 장병완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8. 3. 2. 박주민·강병원·김민기·김종대· 남인순 · 문진국 · 신창현 · 이학영 · 제윤경 · 표창원 의원 발의)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2018. 3. 2. 정부 제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8. 3. 2. 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 김종대 · 이정미 · 손혜원 · 천정배 · 정춘숙 · 소병훈·김광수 의원 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8. 3. 2. 설훈・전혜숙・안호영・유은혜・ 윤관석 · 서영교 · 박정 · 이용득 · 안규백 · 백재현ㆍ이석현 의원 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8. 3. 2. 이종배·신보라·김승희·김석기· 이장우・엄용수・이진복・김한표・홍일표・ 조훈현 의원 발의)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8. 3. 2. 이정미·김종대·노회찬·추혜선· 윤소하 · 심상정 · 김부겸 · 김영호 · 정동영 · 정성호 · 최경환(평) · 이철희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2018. 3. 2. 백혜련·고용진·김정우·노웅래· 박광온 · 박찬대 · 소병훈 · 신창현 · 윤관석 · 전해철 의원 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2018. 3. 2. 이종배·이동섭·함진규·김승희· 김석기 · 이장우 · 엄용수 · 이진복 · 김한표 · 홍일표·조훈현 의원 발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3. 2. 김삼화·하태경·이동섭·신용현· 송옥주·김수민·최도자·정춘숙·권은희· 오세정·남인순 의원 발의)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18. 3. 2. 이용호·조배숙·장정숙·김종회· 정동영 · 김광수 · 이동섭 · 김삼화 · 유성엽 · 최도자 의원 발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8. 3. 2. 이종배·박덕흠·홍문표·곽상도· 김승희 · 김석기 · 이장우 · 엄용수 · 이진복 · 김한표 의원 발의)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3. 2. 정춘숙·양승조·김상희·백혜련· 김현권 · 신창현 · 윤소하 · 유은혜 · 이철희 · 전혜숙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8. 3. 2. 이혜훈・하태경・유승민・정동영・ 최도자 · 이태규 · 이동섭 · 윤영석 · 권은희 · 오세정 의원 발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8. 3. 2. 이혜훈・조배숙・유동수・이태규・ 채이배 · 유승민 · 지상욱 · 김중로 · 윤영석 · 권은희·김상훈 의원 발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18. 3. 2. 나경원·김정재·박순자·김승희· 임이자 · 이명수 · 이철규 · 정유섭 · 정종섭 · 윤종필 의원 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18. 3. 2. 나경원·김정재·박순자·김승희·

임이자·이명수·이철규·정유섭·정종섭· 유종필 의원 발의)

이상 16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서종식) 선출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윤복남) 선출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김춘곤) 선출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원영섭) 선출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이금규) 선출안

(이상 5건 2018. 3. 5. 의장 제의)

### 제35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8. 3. 5. 의장 제의)

3월 5일(1일간)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8. 3. 5.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 위원장 제출)

### ○의안 철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김부겸·정동영·인재근·이찬열·

심기준 · 김영호 · 원혜영 · 민홍철 · 김민기 ·

변재일 · 김정우 · 신창현 · 정성호 · 손금주 ·

오세정 · 박정 · 윤관석 · 김상희 · 고용진 ·

임종성 의원 발의)

### 혐오표현규제법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김부겸·정동영·인재근·이찬열·

심기준 · 김영호 · 원혜영 · 민홍철 · 김민기 ·

변재일 · 김정우 · 신창현 · 정성호 · 손금주 ·

오세정 • 박정 • 윤관석 • 김상희 • 고용진 •

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8일 발의자 철회 요구

### ○서면질문서 제출

###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에 대한 질문서

(2018. 2. 28. 정종섭 의원 제출)

### ○제357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 일 시   | 2018년 3월 5일 오후 4시   |  |
|-------|---------------------|--|
| 집회근거  | 헌법 제47조제1항          |  |
| 이 유   |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안처리     |  |
|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  |
| 요 구 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  |
|       |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외 255인 |  |